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
2024. 2. 21(수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6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(총괄)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

- 최종예산 736,796,866천원(일반 711,333,570천원 특별 25,463,296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1회추경 (안)	비 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
계		736,796,866	735,718,162	734,975,982	742,180	1,078,704	
일	반 회 계	711,333,570	710,254,866	709,512,686	742,180	1,078,704	
특	별 회 계	25,463,296	25,463,296	25,463,296	0	0	
	의료급여기금	585,000	585,000	585,000			
	주 차 장	24,878,296	24,878,296	24,878,296			

4. 문화환경국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1회추경(안)	증감율 (%)
문	화	74,226,487	74,010,785	215,702	0.29 %
문	화	26,453,542	26,237,840	215,702	0.82 %
청	소	45,057,363	45,057,363	0	0.00 %
환	경	2,264,144	2,264,144	0	0.00 %
부	동	451,438	451,438	0	0.00 %

5.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주요내용	최종예산 (①+②)	기정액 (①)	제1회 추경(안) ②
문화체육과				
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조성	- 가산퍼블릭 내 디자인 전문 도서관 조성을 위한 도서 등 구매 및 개관식 비용	109,350	0	109,350
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	-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출연금	7,541,259	7,493,803	47,456
문화예술 공공분야 스페셜리스트 양성 (서울형뉴딜)	-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및 예산승인에 따른 매칭비	8,896	0	8,896
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	- 호압사 내 종각 이축 및 석축개소 보수 정비 공모선정에 따른 매칭비	450,000	400,000	50,000

6. 검토의견

○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(740억 1,078만원)에서 금회 2억 1,570만원이 증액된 총 742억 2,648만원이며,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0.07%에 해당됨.

○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,

가. 문화체육과

기정예산(262억 3,784만원)에서 금회 2억 1,570만원 증액편성
주요 편성 내용으로

가산 작은도서관 조성 1억 935만원 증액

문화예술분야 서울형 뉴딜일자리 889만원 증액

전통사찰 보수정비 5,000만원 증액

○ 문화환경국의 추경예산 편성은 부서별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 및 매칭비 반영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편성과 내역 등이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『지방재정법』

[시행 2024. 1. 12.] [법률 제19334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제45조 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8.4.]